의 안 검 토 보 고 서

- 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. 5. 7. 전병배 의원 외 6인
- 2. 건 명 :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3. 안건요지 : 따 로 붙 임
- 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5월 일

산업건설위원회

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9년 5월 7일 전병배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개정이유

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공급 기준 및 상가등 부대·복리시설의 분양대상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주택공급기준을 개정함(안 제22조 제1항제1호, 제2항제1호 및 제5호).
- 나. 상가 등 부대·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(안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).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,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안 제22조제2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 대상자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일을 상위법령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 하였으며,

○ 안 제24조에서는 상가등 부대·복리시설의 분양을 종전가액의 100 퍼센트 내지 150 퍼센트 범위 안에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.

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면서, 조례운영상 나타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, 본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기대되나, 서울・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가 상가등 부대・ 복리시설의 분양규모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점과,
- 이를 정관에서 정할 경우 정비구역별로 분양규모가 상이하고 과도한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.